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 마련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59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7
1. 비용추계서 요약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2. 4.
3. 회 부 일: 2025. 1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은퇴하거나 재할 실패 후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국민 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자금의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게 <u>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u>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신 설></u>	제13조(자금의 대여) ① ----- ----- <u>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u> ----- -----. <u>1.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u> <u>2.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u> <u>3. 생활안정자금</u>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 ----- ----- -----. <u>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대상·금액·상환조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u>

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생활안정자금이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생계비 등의 자금을 융자하는 지원정책임¹⁾.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²⁾.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25년 예산		총 9,000백만원
지원 내용	유형	긴급생활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한도	최고 700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
	금리	2.5%(연체시 3% 가산)
	상환방법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략)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 12. (생략)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요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u>긴급생활자금</u> 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u>소득 2,000만원 이하</u>
	인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196,009명('25.6.18. 기준)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소득 2,000만원 이하] 26,069명 (예술인의 13.3%, '24년 예술인 실태조사 기준)
		약 1,800명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소득 2,000만원 이하 26,069명의 6.9%) * '24년 지원실적 : 총 <u>1,912명</u> (<u>긴급생활자금 1,779명</u> / 의료비 41명 / 부모요양비 2명 / 장례비 6명 / 결혼자금 84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예술인과 달리 현재 체육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체육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체육인은 부상, 소속팀 해체 등으로 인해 은퇴 연령이 다른 직종에 비해 빠른 편이며³⁾,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업 체육인도 많은 편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높다고 할 수 있음.

- 「2024년 체육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현업 선수 중 연봉이 전혀 없는 선수는 51.7%에 달하며, 은퇴 후 연봉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선수 및 지도자의 비중 또한 40%를 넘는 상황임.

3) 운동선수 은퇴 평균 연령(출처 : 대한체육회)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나이	23.15	22.57	22.51	22.13	23.6

개정안은 체육인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육인에게도 생활안정자금 용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용자 정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⁴⁾이나 그 시행령에 생활안정자금 용자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로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를 명시하고 있음⁵⁾.

4)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삭제

7.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11.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
- 11의2. 노인 및 청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 11의3.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 11의4.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피해자 지원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조기은퇴, 높은 부상확률 등 체육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체육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반해, 기획예산처는 ① 정부의 융자 지원은 민간의 개입이 어려운 분야 등 정책적으로 국가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되어야 하고, ② 예술인 생활안정지원과 달리 동 개정안은 은퇴한 체육인까지 포괄하며, ③ 취약계층 체육인의 경우 이미 정부에서 지원 중인 취약계층 대출지원 사업과 대상이 중복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945억 3,500만원, 연평균 189억 700만원으로 추정됨⁶⁾.

문 의 처
02)6788-5377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 5. (생략)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 10. (생략)

6) 비용추계서 요약은 참고자료 1 참조

※ 참고자료

1. 비용추계서 요약⁷⁾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45억 3,500만원(연평균 189억 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생활안정자금 대여 (안 제13조)	18,907	18,907	18,907	18,907	18,907	94,535	18,907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 안 제13조(자금의 대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음	재량규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보다 세부적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의안정보시스템 비용추계서 원문 참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V5D1E1C2D4B1B5A1I1I4G0H1G7G1